#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7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 박선원·박지원·이성윤

백승아 • 박해철 • 김용만

황정아 · 박희승 · 강준현

오세희・김 현・김 윤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 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

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 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 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 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다음"을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은 제외한다)에 해당 연 도 물가조정계수를 곱하여 매년 정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5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9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65만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72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475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175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175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175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이하 "물가조정계수"라 한 다)를 매년 12월 고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5조(세	율) ①	거주기	사의	종합소
득에 대	한 소 <sup>-</sup>	득세는	해딩	한 연도
의 종합	소득괴	세표준	-에	<u>다음</u> 의
세율을	적용하	<b>나</b> 여 겨	]산한	금액
(이하	'종합소	느득산	출세약	백"이라
한다)을	ユ	세액의	으로	한다.
<후단 /	<u>신설&gt;</u>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 이하	<u>금액의 15퍼센트)</u>
5,000만원 초과	624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8,800만원 이하	<u>금액의 24퍼센트)</u>
8,800만원 초과	<u>1,536만원+(8,800만원을 초</u> 과하
1억5천만원 이하	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
<u> 3억원 이하</u>	하는 금액의 38퍼센트)
<u> 3억원 초과</u>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u>5억원 이하</u>	<u>금액의 40퍼센트)</u>
<u>5억원 초과</u>	1억7,406만원+(5억원을 초과하
<u>10억원 이하</u>	<u>는 금액의 42퍼센트)</u>

	개	정	안	
제55조(세	(율)	1		
			<u>해</u>	당 연
<u>도</u>				
<u>o</u> ]	경우	해당	연도의	기 세율
은 다음	음의 글	종합소	:득과세	표준구
간과 /	세율(	종합소	:득과세	표준구
간별로	적용	하는	백분율	은 제

외한다)에 해당 연도 물가조정

계수를 곱하여 매년 정한다.

세 윸
/川 · 色
과세표준의 6퍼센트
9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765만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1,72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3,475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38퍼센트)
9,175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1억7,175만원+(5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42퍼센트)

<u>10억원 초과</u> <u>3억8,406만원+(10억원을 초과</u> 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 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 세표준에 <u>제1항</u>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
- 2. (생 략) <u><신 설></u>

10억원 초과	3억8,175만원+(1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1				
	l항에 따른 해당 연			
<u>도</u>				
2. (현행과	같음)			
<u>③</u> 기획재	정부장관은 기준 연			
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해			
<u>당 연도</u>	소비자물가지수의 비			
율인 물가	조정계수(이하 "물가			
조정계수"	라 한다)를 매년 12			
월 고시하	여야 한다 <u>.</u>			